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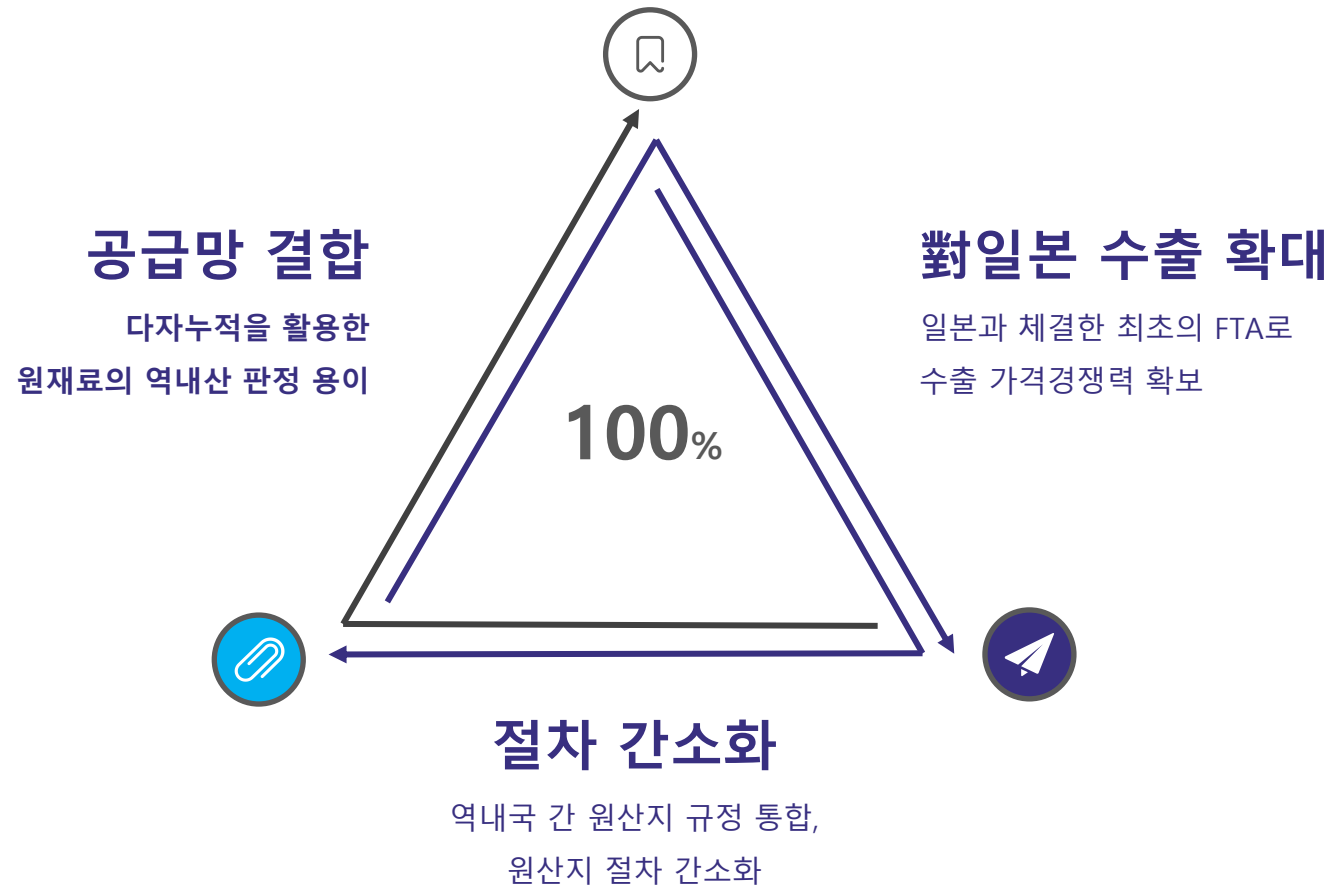
RCEP 이해와 활용

'22. 1. 18.
관 세 청

I . RCEP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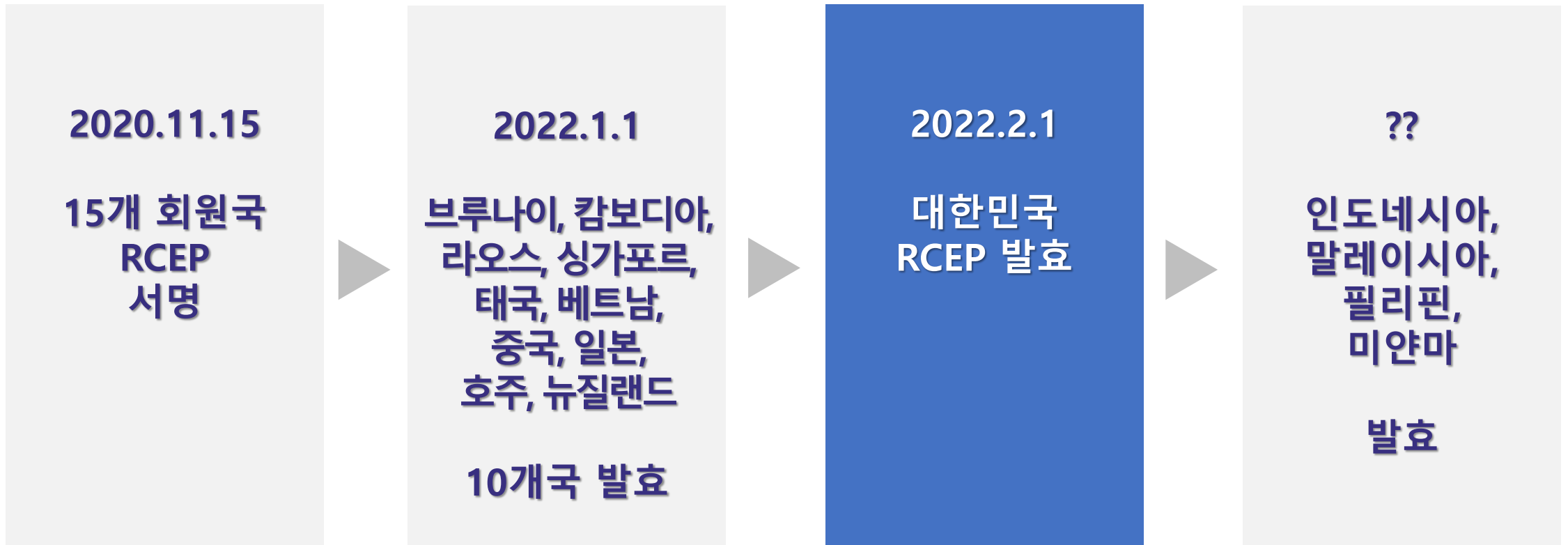
들어가기에 앞서

■ [의의]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통합 무역규범 창설



들어가기에 앞서

- **[발효]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 0시**
-



I. 원산지 규정 관세가 면제되는 특별 물품

■ [개요] 원산지와 관계 없이 국내법에 따라 무관세 수입을 허용

* 협정에서 국내법으로 시행을 위임하여,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한함

▶ {협정 제2.10조} 일시수입 물품

-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입되고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 될 예정이며, 일시 반입된 이후 통상적인 감가상각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품

▶ {협정 제2.11조} 컨테이너 및 팔레트

- 국제 운송에서 상품의 선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컨테이너와 팔레트

▶ {협정 제2.12조} 견본품

- 상업용 가치가 없는 견본품

I. 원산지 규정

I. 원산지 규정 개요

■ [특징] 재료누적·완전누적 /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/ 간접검증 후 직접검증

▶ [누적] 당사국 내 재료의 누적은 협정 발효 즉시 시행

모든 회원국이 협정을 발효한 날부터 공정누적을 포함하는 완전누적 검토 시작
완전누적의 검토는 5년 내에 완료

▶ [원산지증명] 기관발급만 가능하던 아세안 지역에 자율발급 제도 도입

인증수출자 자율증명은 바로 시행

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, 생산자에 의한 완전 자율증명은 협정 발효 10년 내 시행

▶ [원산지검증] 수출자, 생산자 방문검증은 수출국 관세당국 간접검증을 실시한 후 수행 가능

I. 원산지 규정 일반원칙

■ [원산지 상품] 협정 제3장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

{협정 제3.2조(원산지 상품)}

① [완전생산(Wholly Obtained)]

-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

② [원산지 재료로만 생산(Produced Entirely)]

- 하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 유래한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

③ [품목별 원산지규정 충족(Product-Specific Rules)]

- 비원산지 재료를 협정 부속서 3-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용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

I. 원산지 규정 일반원칙

■ [완전생산물]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

{협정 제3.3조(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)}

- ①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,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, 꽃, 채소, 나무, 해초, 균류,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
- ②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
- ③ 당사국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
- ④ 당사국에서 수행된 수렵, 낚사냥, 어로, 농작, 양식,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해 획득된 상품
- ⑤ 당사국의 토양, 수역,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
- ⑥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들 및 비당사국들 영해 밖의 수역,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에서 그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,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된 그 밖의 상품.
- ⑦ 그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른 공해로부터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
- ⑧ 그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⑥부터 ⑦까지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가공되거나 만들어진 상품
- ⑨ 상품의 처분,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다음의 상품
 - 가) 당사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
 - 나) 당사국에서 수집된 중고품
- ⑩ ①부터⑨까지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그 당사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

I. 원산지 규정 일반원칙

■ [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]

{협정 제3.3조(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)}

- ▶ 여러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
 - '누적'과 '중간재'를 통해 RCEP에서 기존의 협정보다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
- ▶ 관세차별 품목인 경우,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원산지 국가 상이

1단계: [원산지 지위] RCEP 제3장의 요건 충족 → RCEP 원산지 상품

2단계: [원산지 국가] PE 상품 중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상 수행 → 수출당사국 원산지

I. 원산지 규정 일반원칙

■ [PSR 충족 상품]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 상품이 되는 경우

{협정 부속서 3-가}

▶ HS2012 기준 총 5,205개 품목의 원산지 인정기준을 규정

- RCEP 회원국과 맺은 기존의 한-아세안, 한-중국, 한-베트남에 비해 850개 완화(16%)

① [역내가치포함비율(Regional Value Content)]

- 상품의 가치 중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공제법 또는 집적법을 사용하여 계산

② [세번변경기준(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)]

- 그 상품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 충족
- 명시적으로 배제된 특정 세번으로부터의 변경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한정

③ [화학반응(Chemical Reaction)]

-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또는 생성 등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드는 것

I. 원산지 규정 일반원칙

■ [PSR 충족 상품] 최소 공정 및 가공

{협정 제3.6조(최소 공정 및 가공)}

- ▶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상품에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공정 및 가공
 - 일반적으로 해당 공정에 특별한 기술, 기계, 장치,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로 판단

- ① 운송 또는 보관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
- ②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
- ③ 감별, 체질, 선별, 분류, 연마, 절단, 쪼개기, 분쇄, 구부리기,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한 가공
- ④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마크, 라벨,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
- ⑤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
- ⑥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
- ⑦ 동물의 도살
- ⑧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
- ⑨ 단순 탈피, 씨 제거 또는 탈각
- ⑩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
- ⑪ ①부터 ⑩까지의 공정 중 둘 이상의 조합

I. 원산지 규정 특례규정

■ [누적]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당사국 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 인정

{협정 제3.4조(누적)}

- ▶ 주요 수입국인 중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의 원재료를 모두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수출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
- ▶ 다만, 원산지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·확인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회원국의 합의 없음
 - 명시적인 확대가 있지 않은 한 RCEP 원산지증명을 구비할 것을 권고

- PSR이 동일하면 RCEP 회원국의 다른 협정(중국·아세안·호주·뉴질랜드)의 C/O 사용 가능?
- 수입 시 다른 협정세율을 적용한 경우 RCEP 원산지재료로 인정 가능?
- 원산지검증 시 누적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?

I. 원산지 규정 특례규정

■ [최소허용수준(De-Minimis)] 비원산지 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

{협정 제3.7조(최소허용수준)}

▶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미미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

1. (모든 상품)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가치의 10% 이하



2. (50류~63류)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% 이하



I. 원산지 규정 특례규정

■ [기타] 재료의 성질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결정 특례

- ▶ [포장재·용기]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 {협정 제3.8조(포장과 포장재료 및 용기의 취급)}
 - 상품의 운송·수송용: 상품의 원산지 지위 결정 시 고려하지 않음
 - 상품의 소매 포장용: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결정 시에만 그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적용
- ▶ [부속품·예비부품·공구] 한 송장 안에 상품과 함께 포함되고, 수량 및 가치가 통상적 수준
 -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결정 시에만 그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적용 {협정 제3.9조(부속품, 예비부품 및 공구)}
- ▶ [간접재료*] 원산지 재료로 간주 {협정 제3.10조(간접재료)}
 - * 상품과의 결합 없이 생산·시험·검사에 사용되거나, 건물의 유지 또는 설비의 운영에 사용
- ▶ [대체가능 상품·재료] 물리적으로 분리 보관하거나, 혼합되는 경우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적용 {협정 제3.11조(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)}

I. 원산지 규정 특례규정

■ [직접운송] RCEP 회원국을 경유하였어도 직접운송 원칙 충족해야 함

{협정 제3.15조(직접운송)}

- ▶ [원칙]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
- ▶ [예외] 추가 가공 없이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서 RCEP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을 경유 가능
 - 관세당국은 직접운송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
 - 협정상 관세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항공화물운송장, 선하증권, 복합 또는 결합운송 서류, 그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, 재무 기록, 비조작증명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같은 상업선적 서류나 화물운송 서류 등을 포함할 수 있음
 - 실무상 우리나라는 비당사국에서 물품의 조작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직접운송 입증을 요구하며, 전체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서류, 세관의 통제 또는 비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그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

Ⅱ. 관세차별

II. 관세차별 개념

■ [정의] 수입당사국이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상이한 관세대우

{협정 제2.6조(관세 차별)}

- ▶ 당사국은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므로,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 (관세차별 발생)

한국	두주
	대 ASEAN 양허표
	대 호주 양허표
	대 중국 양허표
	대 일본 양허표
	대 뉴질랜드 양허표
	제2.6조(관세 차별) 제3항에 관한 부록

일본	두주
	관세 양허표
	제2.6조(관세 차별) 제3항에 관한 부록

세번	품목명	기준세율	1년차	2년차	비고
630533.010	-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직물(무게가 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)	3.3 %	3.1 %	2.9 %	아세안, 호주, 중국 및 뉴질랜드에 대한 대우
630533.010	-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직물(무게가 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)	3.3 %	3.2 %	3.1 %	한국에 대한 대우

II. 관세차별 개념

■ [정의] 수입당사국이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상이한 관세대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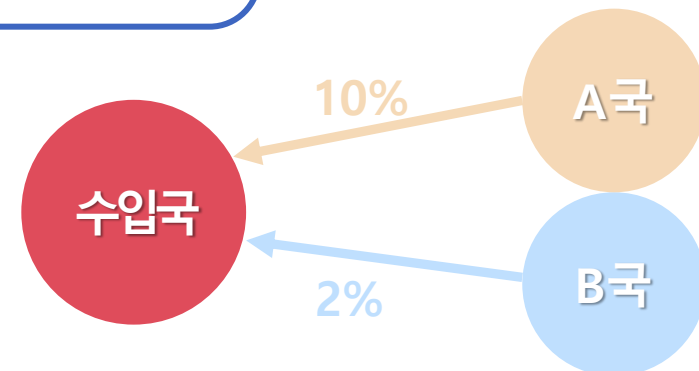
{협정 제2.6조(관세 차별)}

- ▶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
RCEP 회원국 내에서도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 규정

10. Origin Confering Criterion	11. RCEP Country of Origin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우회수출 유인

- ▶ 수입국이 X품목에 대해
A국은 10%, B국은 2%의 관세를 부과한다면
A국의 수출자는 B국을 통해 X를 수출하여 관세 절감



- **[대상] 수출국은 RCEP 회원국, 물품은 RCEP 원산지 상품**

{협정 제2.6조(관세 차별)}

관세차별 일반품목

- ▶ 수입당사국이 각 당사국에 대한 관세율을 상이하게 지정한 품목
- ▶ 수출당사국이 원산지일 요건 :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을 수행

민감품목

- ▶ 수입당사국이 협정 부속서 I 부록에 규정한 품목
- ▶ 수출당사국이 원산지일 요건 :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%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(DV20)

■ [민감품목의 원산지 결정]

{협정 제2.6조(관세 차별)}

민감품목

- ▶ 수출당사국: 한국
- ▶ 수입당사국: 일본 / 민감품목 A에 대해 한국산 5%, 중국산 10% 양허
- ▶ 한국에서 호주(\$20), 베트남(\$30), 중국(\$40)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A 생산
 - ☞ 한국에서 A에 \$10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: $DV = 10/100 \times 100 = 10$ 이므로
원산지는 원산지 재료 최대가치 기여국인 **중국**
 - ☞ 한국에서 A에 \$60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: $DV = 60/150 \times 100 = 20$ 이므로
원산지는 수출당사국인 **한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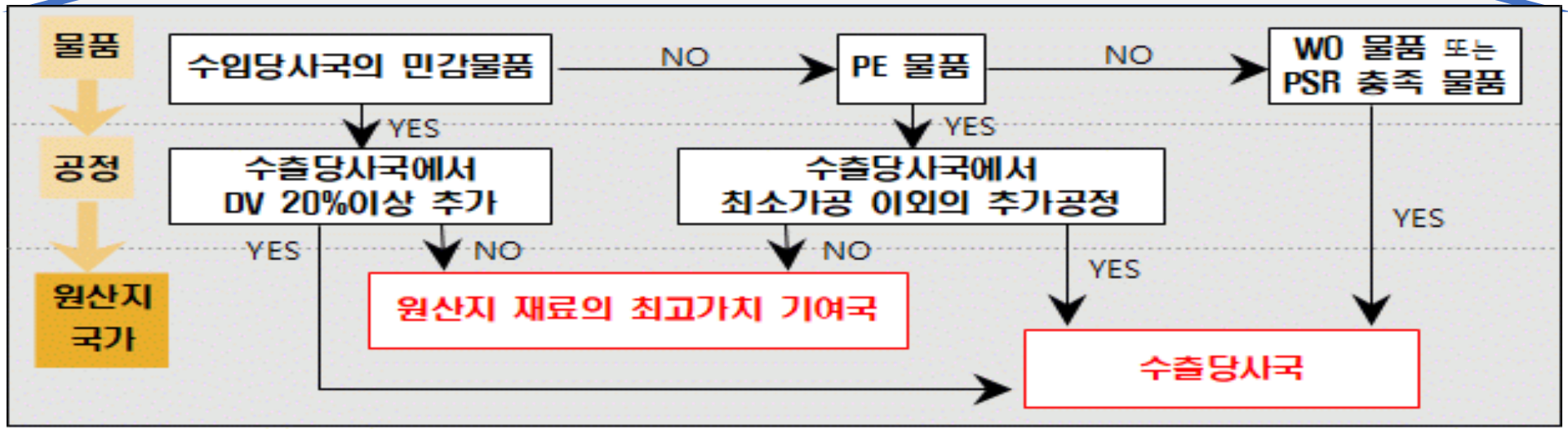
II. 관세차별 원산지 국가의 결정

[관세차별물품] 원산지증명의 'RCEP Country of Origin'에 원산지 국가 기재

{협정 제2.6조(관세 차별)}



< 원산지 국가 결정 프로세스 >



Ⅱ. 관세차별 유의사항

- ▶ 원산지 국가 결정 프로세스에 따라 원산지 국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, 협정 제2.6조제6항에 따라 수출자·생산자와 수입자는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 중 수입당사국의 최고세율 국가 또는 회원국 중 수입당사국의 최고세율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지명할 지 합의
- ▶ 수출당사국이 아닌 다른 당사국의 재료는 DV 계산 시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지 않음
- ▶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인 경우에도 원산지 국가 판단을 위해서는 역내산 재료의 가치를 확인해야 할 수 있음
- ▶ 협정 제2.6조제5항(최소공정)은 제3.6조(최소 공정 및 가공)과 동일하나, 협정 제2.6조제5항은 이미 원산지 지위를 가진 상품의 모든 재료에 적용되는 반면 협정 제3.6조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

II. 관세차별 예시

민감품목의 원산지 국가 결정

- ▶ 대상품목: 무수프탈산(HS 2917.35)
- ▶ 제조 및 수출국: 한국 / ▶ 수입국: 인도네시아
- ▶ 인도네시아측 관세양허: (MFN) 5%, (중국産) 미양허, (한국産) 4.6%

품 명	HS 코드	원산지	원산지 재료 여부	한국산 재료 여부	가격
크실렌	2902.11	중국	○	X	\$20
산화바나듐	2825.30	호주	○	X	\$5
경비+이윤					\$3
국내 운송비					\$0.50
상품가격					\$28.50

- ▶ 원산지 판정 결과: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나 중국산으로 특혜 실익 없음
 - 원산지 지위: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(PE)되었으므로 RCEP 원산지 상품
 - 원산지 국가: 수출국 부가가치가 20% 미만이므로 원산지 재료의 최대가치 기여국인 중국산

II. 관세차별 예시

협정 제2.6조제6항에 따른 원산지 국가 결정

- ▶ 대상품목: 고무매트(HS4016.91)
- ▶ 제조 및 수출국: 한국(다만, 최소공정 이상 공정 미수행) / ▶ 수입국: 필리핀
- ▶ 필리핀측 관세양허: (중국産) 0%, (인도네시아産) 0%, (한국産) 7%

품 명	원산지	역내산 재료 여부	가격
합성고무	중국	○	미상
염화비닐	인도네시아	○	미상
플라스틱 시트	한국	○	미상

- ▶ 원산지 판정 결과: 원산지결정기준 충족, 한국에 대한 관세율(7%) 적용
 - 원산지 지위: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(PE)되었으므로 RCEP 원산지 상품 (불인정공정은 무관)
 - 원산지 국가: 수출국에서 불인정공정만 수행되었고 재료 가격을 알 수 없어 원산지 국가 판정이 불가,
원재료 공급국 중에 최고 관세율이 적용되는 한국산으로 적용 가능
- ※ 원산지증명 제11번란 작성 시 RCEP 원산지 국가명 뒤에 “*” 표기

Ⅲ. 원산지증명

Ⅲ. 원산지증명 개요

■ [원산지증명 또는 원산지신고] 원산지 상품이라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

{협정 제3.16조(원산지 증명)}

- ▶ (발급방식) ①기관발급 또는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
 - 수출자·생산자 자율증명(완전 자율증명) 방식은 협정발효 후 10년 내 시행
 - 우리나라는 시행시기 미정
- ▶ [발급형태] 영어로 작성된 ①서면본(종이) 또는 ②전자본
 - 회원국별로 전자본 형태 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, RCEP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FTA포털 확인
- ▶ [유효기간]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
- ▶ [적용시점]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일('22.2.1.) 부터 발급(작성) 가능
 - 우리나라 협정 발효일에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협정 발효일부터 발급(작성) 가능

Ⅲ. 원산지증명 기관발급

■ [발급기관]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

{협정 제3.17조(원산지 증명서)}

▶ (첨부서류) 수출물품의 선적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아래의 제출

- (인증수출자 혜택) 업체별 또는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

- ①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(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)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
가.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: 국외반출신고서 사본
나.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: 보세운송신고서 사본
다. 우편물·택송품 및 별송품: 영수증·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
-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
- ③ 원산지확인서(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)
- ④ 원산지소명서. 다만,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
- 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·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

Ⅲ. 원산지증명 자율발급

■ [작성권한] 업체별 인증수출자 또는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

{협정 제3.18조(원산지 신고서)}

- ▶ (서식) 아직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의 표준 서식이 회원국 간 합의되지 않음
 - 협정 부속서 3-나(최소 정보 요건) 제2항의 정보가 포함된 어떤 서식이라도 사용 가능하나,
 -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활용 권고

- ① 수출자 이름 및 주소 / ② 생산자 이름 및 주소(아는 경우로 한정) / ③ 수입자(수하인) 이름 및 주소
④ 상품명, HS6단위 / ⑤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 및 생산자 식별번호 / ⑥ 고유 참조번호
⑦ 원산지결정기준 / ⑧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
⑨ 협정 제26(관세차별)에 따른 RCEP 원산지 국가
⑩ FOB가격(원산지 지위 결정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) / ⑪ 상품의 수량
⑫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본 발급번호, 발급일, 최초 수출국 RCEP 원산지국가, 최초 수출당사국의 인증수출자 번호(가능한 경우)

Ⅲ. 원산지증명 연결 원산지증명

■ [개념] 원본 원산지증명을 기초로 중간 경유 당사국이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

{협정 제3.19조(연결 원산지 증명)}

- ▶ (발급주체)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과 해당 품목의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
 - 중간 경유 당사국과 수입당사국 모두가 완전 자율증명을 이행하는 경우에만
 -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가능

- ① 유효한 원산지증명 원본 제시
-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
-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-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
- ④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
 - 재포장, 하역, 재선적, 보관, 탁송물의 분리, 라벨링, 상품의 보존 또는 운송에 필요한 공정은 가능
-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분할 선적되어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본 전체 수량 이내
-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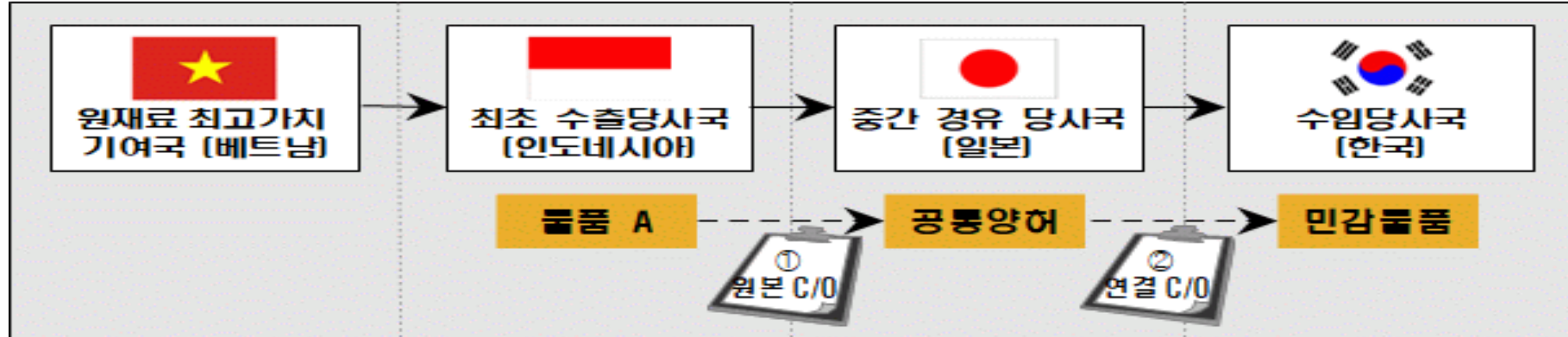
Ⅲ. 원산지증명 연결 원산지증명

■ [관세차별 물품의 적용] 중간 경유 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 국가 판단

{협정 제3.19조(연결 원산지 증명)}

▶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출자는 관세차별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판단하여 기재(신청)

원본/연결 원산지증명의 원산지 국가 상이



① 원본 원산지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: 인도네시아

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: 인도네시아의 DV에 따라 상이

- 인도네시아의 DV > 20% : 원산지 인도네시아

- 인도네시아의 DV < 20% : 원산지 베트남

감사합니다